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45
----------	-------

제출년월일 : 2023. 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춤 허용업소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춤 허용업소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법규 및 용어 등 정비(안 제5조제1항)
- 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신설(안 제6조)
- 다. 지정 제한사유 신설(안 제7조)
- 라. 변경신청 대상 추가(안 제8조제1항)
- 마. 안전기준 강화(안 제9조제1항)
- 바. 영업제한 규정 명문화(안 제10조)
- 사. 안전사고 예방시책 마련 명문화(안 제11조)
- 아.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 자.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 제2호, 제4호 서식)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7)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2. 2. ~ 2. 22.

나) 제출의견 : 1건 (미반영)

- 지정 유효기간, 지정제한 사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반대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수정의견 (반영)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 의결(2023. 3.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발행하는**”을 “**발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춤 허용업소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
한다.

제7조(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하
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
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
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8조(종전의 제6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객석 면적

제9조(종전의 제7조) 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업자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영업장내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것

7.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업장에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할 것

가. 영업장의 지상층 : 면적 100m²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면적 100m²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

나. 영업장의 지하층 : 면적 66m²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면적 66m²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

7의2. 안전요원은 업무 수행 시 소속 업소 및 안전요원임을 표시한 복장 등을 통해 외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12.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13.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권장

제10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출입 허용업소의 출입 허용 시간)”을 “(영업 시간 및 제한)”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있다”를 “있으며, 영업자 및 안전요원 등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전단 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3호의2, 제7호, 제7호의2, 제12호, 제1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영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츄름 허용업소

[] 지정 [] 재지정 []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사항	명칭(상호):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영업의 형태 : 츄름 허용업소						
	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	객석 면적 :
변경 신고사항	변경전 :						
	변경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츄름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츄름 허용업소 []지정 []재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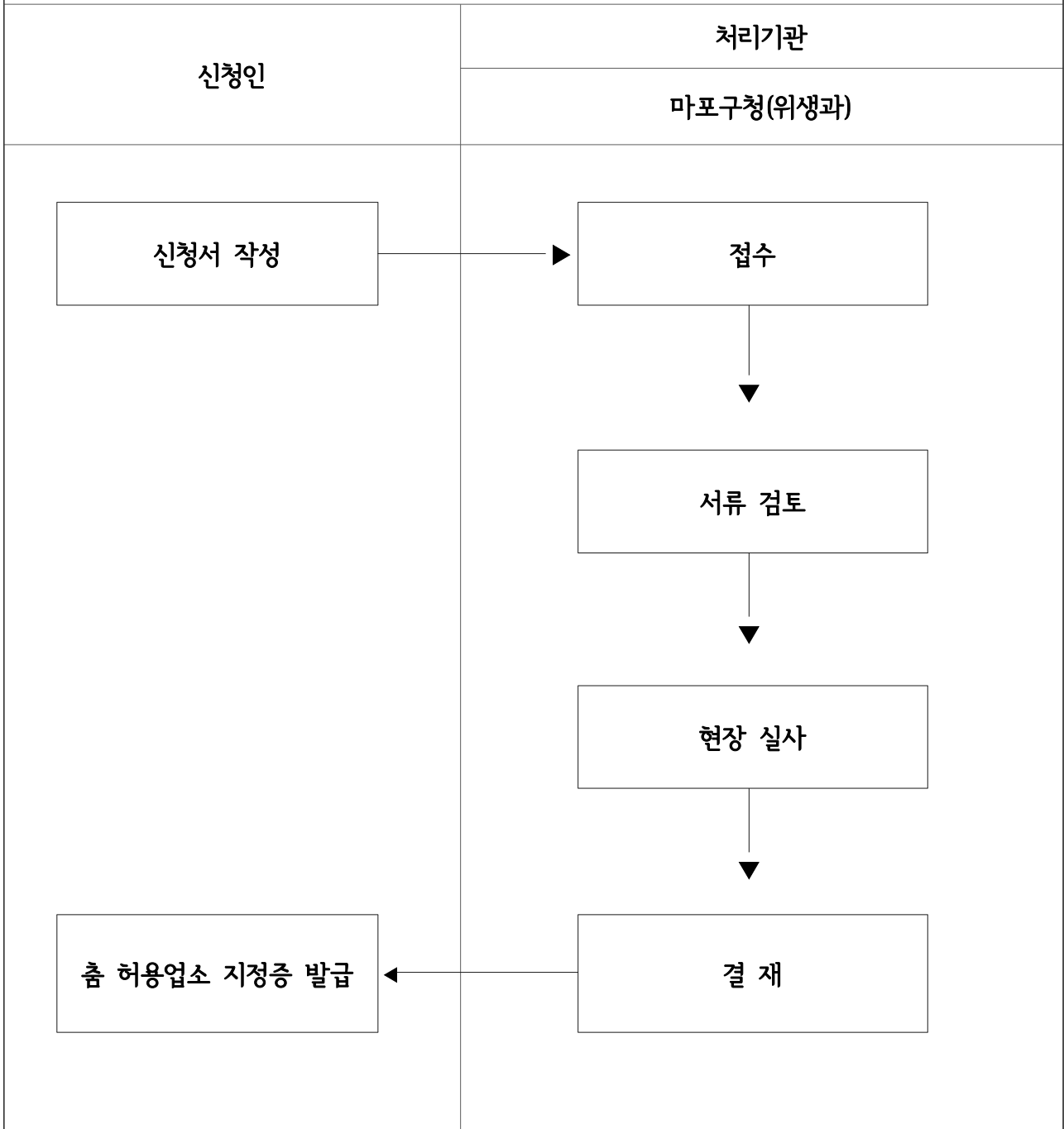
마포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춤 허용업소 지정증

- 대 표 자 :
- 영업소명칭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영업장 면적 :
- 객 석 면 적 : (최대수용인원: 명)
-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신고번호: 제 호)
- 영업의 형태 : 춤 허용업소
- 조 건 : 영업장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
- 유효기간 :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직인

(뒤쪽)

변 경 내 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층 허용업소 관리대장

순번	명칭	소재지	대표자	영업장규모 m ² (객석 m ²)	지정일자	변경내역	비 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안전사고 예방 계획서

업소명		대표자	(☎)
소재지	마포구		
안전관리 책임자	(HP)		
영업장 총면적(m ²)		객석면적(m ²)	
소방안전시설	업소 구비내역	안전기준	비고
소방안전점검 실시	20 년 월 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소방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분기, 월	분기별 1회 이상 받은후 결과 제출	
방음시설(○,×)	완비(), 보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정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비상구	개소	상시개방	
영업장내 입장인원	명	객석면적 1m ² 당 1명으로 제한할 것	
안전요원	명	영업장 면적 [66m ² (지하층) / 100m ² (지상층)] 이하 1명이상 영업장 면적 [66m ² (지하층) / 100m ² (지상층)] 초과때마다 1명씩추가	
정전시 자동 비상조명등	출입구 비상구 객석방향	개 개 개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이상 설치할 것
휴대용 비상조명등		개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할 것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	분산비치 벽면비치	개 개	업소내 분산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소화기(3.3kg)		개	영업장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

비상조명등, 방독면, 소화기 비치평면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5조(츨 허용업소의 지정신청)</p> <p>① 영업자가 츨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소방본부장 또 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 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p> <p>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p> <p>5. (생략)</p> <p>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 획서 1부</p> <p><u><신 설></u></p>	<p>제5조(츨 허용업소의 지정신청)</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발급하는 ----- -----</p> <p>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p> <p>5. (현행과 같음)</p> <p>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 서 1부(별지 제4호서식)</p> <p>제6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p> <p>① 제5조에 따른 츨 허용업소 지정 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p> <p>② 츨 허용업소로 재지정을 받으려 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츨 허용업소 지정 신청서 1부.</p>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2.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4. (생략)

<신 설>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4. ~ 6. (생략)

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경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객석 면적

제9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영업자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영업장내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것(신설)

4. ~ 6. (현행과 같음)

7. 안전요원은 영업장면적 100m²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하고, 영업장면적 100m²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신 설>

8. ~ 11. (생략)

<신 설>

<신 설>

제8조(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 시간으로 한다.

<신 설>

7.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업장에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할 것
가. 영업장의 지상층 : 면적 100m²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면적 100m²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

나. 영업장의 지하층 : 면적 66m²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면적 66m²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

7의2. 안전요원은 업무 수행 시 소속 업소 및 안전요원임을 표시한 복장 등을 통해 외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8. ~ 11. (현행과 같음)

12.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13.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권장

제10조(영업 시간 및 제한)

(현행과 같음)

다만,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

부 칙

<신 설>

제11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 있으며, 영업자 및 안전요원 등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 등)

----- 제9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3호의2, 제7호, 제7호의2, 제12호, 제1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영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츄름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형태: 츄름 허용업소 영업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영업장의 면적: m ² 지상 층, 지하 층	
변경 신청사항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츄름을 주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츄름 허용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	---

210mm×297mm(복합지 80g/m²)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츄름 허용업소

[] 지정 [] 재지정 []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적상이 아무런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형태: 츄름 허용업소 영업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영업장의 면적: m ² 지상 층, 지하 층 객석 면적: m ²	
변경 신청사항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츄름을 주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츄름 허용소 []지정 []재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	---

210mm×297mm(복합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츄름 허용업소 지정증
○ 대표자:	
○ 영업소명칭: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영업장 면적: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신고번호: 제 호)
○ 영업의 형태:	츄름 허용업소
○ 조건:	영업장내에 별도의 츄름을 주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츄름을 주는 것을 허용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츄름을 주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츄름 허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츄름 허용업소 지정증
○ 대표자:	
○ 영업소명칭: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영업장 면적:	
○ 객석 면적:	(최대수용인원: 명)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신고번호: 제 호)
○ 영업의 형태:	츄름 허용업소
○ 조건:	영업장내에 별도의 츄름을 주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츄름을 주는 것을 허용함.
○ 유효기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츄름을 주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츄름 허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3호서식 (생략)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안전사고 예방 계획서

업소명			대표자	()
소재지	마포구			
안전관리 책임자			(HP)	
영업장 총면적(㎡)		객석면적(㎡)		
소방안전시설	업소 구비내역	안전기준	비고	
소방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20 년 월 일 분기, 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소방안전점검 실시 분기별 1회 이상 받은 후 결과 제출		
방음시설(O, X)	완비(), 보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정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비상구	개소	상시개방		
영업장내 입장인원	명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할 것		
안전요원	명	영업장 면적 [66㎡(지하층) / 100㎡(지상층)] 이하 1명 이상 영업장 면적 [66㎡(지하층) / 100㎡(지상층)] 초과면마다 1명씩 추가		
정전시 자동 비상조령등	출입구 비상구 객석방향	개 개 개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	
휴대용 비상조령등	개	개	벽면 5m당 2개류를 1개씩 설치할 것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	분산비치 벽면비치	개 개	업소내 분산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소화기(3.3kg)	개	개	영업장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	

비상조령등, 방독면, 소화기 비치평면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위생과 조재현
연 락 처	02-3153-9193